

행 정 자 치 부

시정 요구·통보

제 목 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복구 및 복구예치금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내 용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서는 「산지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등을 근거로 산지전용허가 등과 이에 따른 산지복구, 산지복구비의 예치 및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산지전용허가 등의 토지에 대한 관리소홀

「산지관리법」 제14조 등⁶⁵⁾에 따르면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예치금을 예치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해의 방지를 위한 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65)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25조, 제3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토사채취허가·신고, 채석신고 등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허가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산지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등은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제출·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면 시장·군수는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정하는 기간⁶⁶⁾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와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산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치된 복구비를 이용하여 복구를 대행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복구의무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산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된 산지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를 이용하여 복구대행 하거나, 예치된 복구비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에서는 ○○○○보험으로부터 복구비용 659,350,000원을 보증 받은 평창군 ○○면 ○○리 0000-00번지 등 15개소와 세입세출외현금 102,592,000원이 예치되어 있는 고성군 ○○면 ○○리 산00번지 등 6개소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해방지 등을 위한 복구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정선군

66)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야 하는 정하는 기간.

-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면 ○○리 산000번지 등 4개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자로부터 복구예치금 6,246,670원을 예치하게 하였음에도 최소 3개월 이상 복구대행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2.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복구예치금 미반환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재해방지나 경관유지 등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된 복구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복구설계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복구의무자가 시장·군수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이용하여 복구를 대행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였거나 복구대집행이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와 복구의무면제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치된 복구비(발생된 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군에 귀속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복구의무자 또는 복구대행자가 복구를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된 경우, 복구의무면제 확정된 경우 등 복구예치금에 대

한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그 예치자에게 복구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군에 귀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복구의무자 등이 복구를 완료하였는데도 복구예치금(발생된 이자 포함)을 예치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데도 귀속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취소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금액 30,575,530원과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금액 83,283,696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실시하고 남은 잔액 11,065,800원 등 총 124,925,026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5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3. 복구준공에 따른 예치된 하자보증금 등 미반환

「산지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이후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고 복구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치된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75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게하고,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이용하여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규칙 제44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에 따르면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

보증금과 그 잔액(발생된 이자 포함)을 예치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군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하자보증금에 대한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예치된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잔액 등을 예치자에게 반환조치를 하여야 하고,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군에 귀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주시, 평창군, 횡성군에서는 산지복구준공에 따라 예치한 하자보증금(발생된 이자 포함) 등을 예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예치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데도 귀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884,11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짧게는 35개월, 길게는 9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횡성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화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는**

[시정]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지난 고성군 ○○면 ○○리 산 00번지 등 25개소에 대하여 인근지역 등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복구의무자 등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거나 복구의무자가 복구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자를 지정 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장, 횡성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화천군수,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는

[통보]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복구준공 완료, 복구완료 이후 남은 잔액 등 반환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반환하고 있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124,925,026원에 대하여 조속한 반환 등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장, 횡성군수, 평창군수는

[통보] 산지복구 준공에 따라 예치하였던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 이후 남은 잔액 포함) 884,110원에 대하여 조속한 반환 등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